

의안번호	2205056
의 퇴 인	김대식 의원
회 답 일	2024.11.28.
추 계 번호	24C4458

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의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학교의 역할)	(제1항) 학교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구 환경의 조성, 산학협력(産學研協力)의 촉진 및 성인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학교는 제1항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2	안 제5조 (통합국립대학의 운영)	(제1항) 교육부장관은 2개 이상의 국립대학 또는 공립대학이 단일대학으로 전환하는 경우, 지역 사회의 요구에 따른 산업인력을 양성하고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해당 대학을 통합국립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국립대학이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거나 연구 및 지산학협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3항) 통합국립대학에는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통합국립대학위원회를 둔다. (제4항) 제1항에 따른 통합국립대학의 운영 및 제3항에 따른 통합국립대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3	안 제7조 (학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제3조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상호간의 교원교류와 연구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4	안 제11조 (학교협의체)	(제3항)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협의체가 이 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재량규정
5	안 제12조 (대학규제개혁협의회)	(제1항) 교육부장관은 학교에 적용되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규제의 혁신과 개선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학교협의체, 학생, 교직원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재량규정
		(제2항) 제1항에 따른 대학규제개혁협의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6	안 제14조 (학생에 대한 지원)	(제1항) 학교는 우수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학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장학·복지·진로·취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제1항의 따른 역할을 수행하거나, 학교가 관계 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학생에 대한 지원을 할 경우 학교 또는 관계 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재량규정
7	안 제18조 (교직원의 구분)	(제3항) 학교에는 연구 수행을 위해 박사후연구원을 둘 수 있다	재량규정
8	안 제58조 (교육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의 설립등)	(제1항) 교육대학은 국가가 설립한다.	의무규정
		(제2항) 국가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목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대학(이하 “종합교원양성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3항) 교육대학이 사범대학이 있는 국립대학과 통합하는 경우 그 대학은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통해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종합교원양성대학의 지정 절차 및 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제4항)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은 종합교원양성대학에 지역 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와 교원 전문성 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5항) 종합교원양성대학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 중 교육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의무규정
9	안 제63조 (전공심화과정의 설치 및 학위 수여)	(제1항) 전문학사학위를 수여받은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2항)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대학의 장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현황을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운영 기준, 제2항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 운영현황 공개에 관한 구체적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10	안 제65조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설치 및 학위 수여)	(제1항) 고숙련 기술 전문가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교육여건에 따라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전문기술석사과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운영 현황을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제5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 기술석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여건 및 입학 자격에 관한 구체적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안 제69조 (사이버대학의 전공심화과정 설치 및 학위수여)	(제3항) 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운영 기준, 제2항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 운영현황 공개에 관한 구체적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안 제73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지역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재량규정
13	안 제74조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등)	(제1항) 제73조에 따른 지원 및 지역 고등교육의 발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광역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광역 지방자치단체, 학교, 지방교육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장 등으로 구성된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의 관할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학교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의무규정
		(제2항)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3조에 관한 사업,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과 지역의 협업체계 및 지역 고등교육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별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항)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담기관에 제73조에 관한 업무 및 사업,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과 지역의 협업체계 및 지역 고등교육의 발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4항) 제1항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4	안 제75조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설치)	(제1항) 제73조에 따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및 지역 고등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3조에 따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2. 제78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규제특례의 적용·변경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3. 교육 관련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 대학재정지원 관련 재정의 확보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간 등의 고등교육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사항 6. 지역의 고등교육 관련된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및 지역 고등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의무규정
		(제3항) 지원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조정·처리하거나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고 제73조에 따른 지원과 제78조에 따른 규제특례 사항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재량규정
15	안 제77조 (전문기관의 지정)	(제1항) 교육부장관은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고 지역 고등교육 관련 조사·분석·평가·연구·성과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2항)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3항) 그 밖의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16	안 제78조 (규제특례)	(제1항)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이하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이라 한다) 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안착과 학교의 발전에 필요한 규제특례(이하 “규제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광역 지방자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제74조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항)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이를 소관으로 하여 처리한다. (제3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하기 위하여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4항) 제2항 또는 제3항의 기간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할 경우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5항) 교육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지원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6항) 제75조에 따른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제특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학생의 학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협의체 및 학교 구성원들과 협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규제특례 신청 내용 2. 해당 특례를 통한 학교 및 학생, 교직원 등의 편익 3. 규제특례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 4.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제7항)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제6항의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규제특례를 하여야 한다. (제8항) 교육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하는 경우 해당 규제특례의 심사기준을 제1항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79조에 따른 규제특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규제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0항) 규제특례를 받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은 규제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른다. (제11항)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규제특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안 제79조 (규제특례의 변경·취소 등)	(제1항) 제78조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교육부장관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전에 규제특례의 대상이 되는 근거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2항) 제1항 단서에 따른 규제특례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제3항) 교육부장관은 제78조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신청한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규제특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8조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4항)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또는 제78조제1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신청한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규제특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규제특례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재량규정
		(제5항) 제4항에 따라 규제특례가 취소된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규제특례 사항을 계속해서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항) 그 밖에 규제특례의 연장·변경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0조(학교의역할) 안 제5조 (통합국립대학의 운영)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강화하고 대학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¹⁾ 「고등교육법」을 전부 개정하는 것임
 - 개정안은 현행 「고등교육법」의 조항 위치 등을 조정하면서, ‘학교의 역할(안 제3조)’, ‘통합국립대학(안 제5조)’, ‘학교협의체(안 제11조)’ 및 ‘대학규제개혁협의체(안 제12조)’, 학생에 대한 지원(안 제14조), ‘종합교원양성대학’에 대한 지원(안 제58조), 전공심화과정 및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 및 학위 수여 과정(안 제63조 등),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 구축 등(안 제73조 등)에 대하여 추가로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존에 실시되던 사업 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추가 지원이 실시될 수 있으나, 구체적 사업내용 및 소요재원을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음²⁾³⁾⁴⁾⁵⁾⁶⁾⁷⁾

1) 개정안의 제안이유 참조

2) 안 제12조는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학교협의체, 학생, 교직원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대학규제개혁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교육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이미 대학규제 발굴 및 개선 추진을 위한 자율 협의체로 위원장 포함 18인으로 구성된 대학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 중이므로 개정안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3) 개정안 시행 후 안 제33조, 안 제46조 등에 따라 국공립대학에 학사학위과정·석사학위과정·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이 설치되는 등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과정 운영을 위한 인력과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지 않고 기존 인력 및 예산으로 운영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4) 개정안 제41조제2항 단서는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한국어능력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2024년 현재 “한국어능력시험(TOPIK)”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제7항에 의거 국립국제교육원이 수행하고 있고, 해당 사업이 응시료 수입으로 운

- (안 제3조) 개정안은 학교로 하여금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해당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과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해당 조항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구체적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 (안 제5조)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통합국립대학이 지역특화산업 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산학협력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구체적 사업내용 및 소요재정을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음
 - － 참고로 국립대인 강원대와 강릉원주대는 2023년 글로벌대학 사업에 선정되어 2026년 통합을 목표로 제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대학의 글로벌대학 실행계획서에 따르면 2027년까지 총 4,278.2억원의 재정투자가 계획되어 있음
 - － 다만, 해당 대학 외에 개정안 시행 이후 설립될 통합국립대학의 숫자와 규모, 이에 대한 지원내역을 구체적으로 예상하기 곤란함
- (안 제7조)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존 지원 외에 ‘제3조(학교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따른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안 제3조를 위한 구체적 사업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움
- (안 제11조제3항) 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협의체가 이 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 시행후 새로운 협의체가 구성·운영되거나 지원이 추가될 경우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구체적 사업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움
 - － 참고로, 대학 및 전문대학협의회의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각각 근거 법률⁸⁾⁹⁾에 따라 ‘대입전형 사전예고제 지원’ 사업(한국대학교육

영되는 수입대체경비사업입을 고려할 때 추가재정소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5) 안 제44조제3호에 따라 휴학생이 증가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직접적 재정소요변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6) 안 제50조에 따라 시간제 등록 가능 자격이 있는 자가 늘어날 수 있으나, 해당 조항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국공립대의 시간제등록 강좌수와 필요 교원 등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므로 재정소요변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7) 안 제54조에 따라 전문대학과 통합한 대학에서 학사학위 외에 전문대학학사학위과정 등을 운영하더라도 이의 수업연한은 기존 전문대학학위과정 등과 동일하므로, 추가 인력 및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추가재정소요를 계상하지 않음
- 8)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제3조(기능), 제9조(경비보조 등) 및 제17조(업무위탁)
- 9)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9조(경비보조 등) 및 제17조(업무위탁)

협의회 보조사업, 2024년 773백만원), ‘고등직업교육 역량강화 사업’(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위탁사업, 2024년 737백만원)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안 제14조)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교가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관계기관과 상호협력하여 학생을 지원할 경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관련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예측하기 곤란하여 추계에 한계가 있음
- (안 제18조제3항 등) 개정안은 학교에 연구 수행을 위한 ‘박사후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국공립대학에 이들에 대한 인건비 등이 편성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이들에 대한 인건비 편성여부, 구체적 단가 등에 대한 예측이 곤란하여 추계에 한계가 있음
- (안 제58조)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으로 하여금 종합교원양성대학에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와 교원 전문성 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구체적 지원내용과 소요예산을 추정하기 어려움
 - － 참고로, 교육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4년 현재 전국에는 총 10개의 국립교육대학과 1개의 종합교원양성대학이 있으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부산교대와 부산대(사범대 설치 국립대)의 통합대학에 대한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의 지정을 검토할 예정임
- (안 제63조 등) 개정안은 ‘전공심화과정’과 ‘전문기술석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개정안 시행 후 제정될 대통령령의 내용에 따라 해당 조항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변동될 수 있어 추계가 곤란함
 - － 현행법 제50조의2와 법 제54조의2는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하면서, 해당 지정을 위한 평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법 제49조의2 및 제50조의4는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면서 해당 인가를 위한 평가를 대통령령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 이에 개정안 시행 이후 제정될 대통령령에 현행법 및 시행령과 유사한 내용이 규

정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미미할 수 있으나, 사전인가제가 폐지될 경우 관련 위
탁비용¹⁰⁾ 등이 감소할 수 있음

- (안 제73조)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
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행정
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해
당 조항은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 (안 제74조제1항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개정안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
원위원회’를 안 부칙과 업무성격 등을 근거로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근거한 ‘지역협업위원
회¹¹⁾’와 규모 등이 유사한 것으로 보면서, 개정안 시행 시 관련 법 조항도
정비되는 것으로 볼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안 제74조제2항 전담기관) 개정안의 ‘전담기관’을 안 부칙과 업무성격 등
을 근거로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
항에 따른 ‘전담기관¹²⁾’과 그 사업규모 및 소요예산이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면서, 개정안 시행 시 해당 법 조항도 정비되는 것으로 볼 경우
추가재정소요 변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안 제75조) 개정안의 지원위원회를 안 부칙과 업무성격, 설치주체(교육부
장관), 위원 수(20명) 등을 근거로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위원회¹³⁾’와
소요예산이 유사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보면서, 개정안 시행 시 해당 법 조
항도 정비되는 것으로 볼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¹⁴⁾
- (안 제77조)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역 고등교육 관련 조사·분
석·평가·연구·성과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
정하도록 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세부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구체적 소요비용에 대한 추계가 곤란함
- (안 제78조 및 제79조) 개정안은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광역 지방자

10) 현행법 제50조의2에 따른 지정평가 위탁단체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2024년 예산 165백만원)이
며, 사이버대학의 경우 별도의 위탁 없이 직접 수행하고 있음

11) 지역의 협업체계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임

12)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체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됨

13) 지방대학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

14) 다만, 개정안 시행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지 않는 경우, 안 제73조·
제74조·제75조에 따른 위원회와 전담기관 등을 포함한 관련 제도에 대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특례를 하도록 하면서, 이의 연장 및 변경, 취소에 대하여 규정하여 규제특례로 인한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세부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구체적 소요비용에 대한 추계가 곤란

- 이에 개정안은 법 시행에 따라 추가될 사업내용과 예산소요에 대한 구체적인 예상이 어려운 경우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